

◆ 政府 施策 ◆

外國人 投資企業 法人稅 減免 – 외자도입법 개정안 입법예고 … 내년 4월 시행 –

내년 4월부터 戰略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法人稅가 최초 소득발생년도부터 5년간 전액 감면된다. 또 서울 도심지에 정부의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각 市·道에 외국인투자진흥관설이 신설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설립관련 민원이 한결 신속하게 처리된다.

財務部는 이같은 내용을 주골자로 하는 外資導入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가을 定期國會를 통과하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기술의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대상을 현재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 투자'에서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긴요하고 국내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어려운 전략고도기술을 수반하는 外投企業'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83개 업종으로 돼 있는 감면대상이 환경·정보통신분야의 전략고도기술 등으로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재무부는 올 11월께 구체적인 전략고도기술을 고시할 계획이다.

조세감면 적용대상은 축소되나 대상업체에 대한 감면폭은 지금보다 대폭 확대된다. 현재 고도기술을 수반한 外資企業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사업개시 년도 및 그후 3년간 100%로 면제하고 그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재무부는 그러나 이번 외자도입법 개정을 통해 戰略고도기술관련 외자기업에 대해 최초 이익발생년도부터 5년간 100%를 감면하고 그후 3년간은 50%를 감면하는 등 稅制지원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또 현재 경기도 과천의 제 2 정부청사 내에 있는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서울 도심지로 옮겨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인가의 신청과 처리는 물론 고충처리, 정보제공, 사후서비스 지원을 적극 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市·道에 외국인투자진흥관을 설치하고 공장설립관련 外投企業이 주식매각대금으로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원화표시 출자를 허용하는 등 투자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外國規格 획득 지원강화

- 工振廳, 生技院 · 6개 研究院 지원업무 세분화 -

공진청은 완구·전기용품·압력솥 등 주요 소비제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국내기업의 외국규격 획득 지원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진청은 최근 미국·일본·유럽 각국들은 완구·전기용품등 주요 소비 수입제품에 대해 자국의 안전규격에 의한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를 외국 규격의 획득이 없이는 국내기업들의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공진청은 외국규격획득 지원업무를 특성에 맞게 세분화·전문화 시키기 위해 6개 연구원과 생기원에 구성되어 있는 외국규격획득 지원반의 인력과 조직을 강화, 관련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내검사기관의 시험검사능력을 확충함과 아울러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95년 까지 시험검사장비도입 비용을 7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기관·관련조합·대기업군 품질경영추진본부 등 50개 기관이 협력하여 수검업체·회원업체·수급업체 등 관련업체 약 2천여개사를 대상으로 양케이트 조사 및 업체회의·교육·방문 등을 통해서 외국규격획득 희망업체를 발굴, 지원기관에 연관시켜 규격획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외국규격획득을 희망하는 업체 대해서는 관련검사기관에서 해당업체의 품질관리상태, 제품 품질수준, 경영상태, 필요한 제조 및 시험설비 보유상태에 대한 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규격획득에 적합한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진청은 현재 국내검사기관이 미국·일본·유럽지역을 중심으로 20개국 41개 외국검사기관과 상호 인증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시험검사등을 대행하고 있으나 향후 더 많은 국가와의 상호인증협정 체결을 유도하여 우리기업이 외국규격 획득을 보다 쉽고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返送 · 원산지표시 對象물품 整備추진 - 關稅廳, 先通관관련 담보규정도 통폐합 -

관세청은 수출용 원재료, 보세용품을 반송대상에 추가하고 기계류등 高價 자본재는 원산지표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현재 통관상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반송대상물품과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한 개정 및 조정작업을 진행중이다.

관세청은 우선 장기비축하던 수출용원재료나 수출용보수물품의 반송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반송업무처리규정을 고쳐 **返送이** 필요한 경우 반송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가운데 수입자가 대부분 실수요자인 제조업자이고 일반물품처럼 시중에 不法유통될 소지가 적은 기계, 선박등 원산지표시 실익이 없는 高價자본재등의 경우 표시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할 방침이다.

대신 수입개방 확대로 최근 수입되는 물품 가운데 소비자나 農漁家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비재, 식음료, 농수산물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표시대상물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특히 관세청이 기계류, 선박등 高價자본재를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은 원산지표시로 원가상승과 통관지연에 따른 적기 시설투입 차질등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분산규정돼 민원인의 불편이 많은 수입물품의 면허전반출이나 減免물품등에 관한 약속어음 담보제공 운영세칙, 포괄담보운영요령등의 담보관련규정도 하나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행정규제완화등 통관절차가 간소화된 것을 악용, 일부 수입업자들이 수입제한물품이나 高관세율 물품을 자동승인 물품이나 低관세율 물품으로 수입신고하는 등 이같은 핵법가장수입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 일선세관에 시달할 방침이다.